

# 『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』 검 토 보 고 서

## 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## 2. 제안이유

- 「주택법」에서 공동주택단지 지원, 공동주택관리 감사 등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2016. 8. 12.부터 「공동주택관리법」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게 됨.
- 현행 개별 조례인 「구미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」, 「구미시공동주택시설관리지원조례」, 「구미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」를 각각 폐지하고,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「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」로 통합 제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통합 조례 제정
  - 제정 : 「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」
  - 폐지 : 「구미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」  
「구미시공동주택시설관리지원조례」  
「구미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」

-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·운영(안 제3조 ~ 제23조)
- 공동주택관리 시설 지원 관련 자부담 비율 조정 및 영구·국민 임대주택 최우선 지원 내용 삭제(안 제24조)
  - 당초 : 시부담 70%, 자부담 30%
  - 변경 : 시부담 80%, 자부담 20%(150세대 이하 소규모 단지)
-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게 위촉직 위원 구성(안 제5조, 제27조, 제34조)

#### 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공동주택관리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, 「주택법」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, 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」,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, 「양성평등기본법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불임)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.
-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.